

## 고령자의 재취업 실태

이상호\*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정의와 근로 실태, 소득수준, 빈곤에의 함의 등을 다루었다. 먼저, 은퇴상태별 구성비는 만50세 이상의 고령자 2,178명 중 비은퇴 46.3%, 완전은퇴 43.6%, 그리고 재취업이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취업자는 이전의 주된 일자리나 비은퇴자의 종사상지위와 비교할 때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업으로의 이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105만원으로 비은퇴자 일자리의 근로소득(140만원)에 비해 75%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개인의 총소득격차로 이어지는데, 재취업 가구주의 총소득은 월평균 156만원으로 비은퇴 가구주의 86%수준이며, 완전은퇴자의 총소득은 월평균 91만원으로 비은퇴 가구주의 절반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가구의 빈곤율은 17.2%로 비은퇴 가구(16.3%)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완전은퇴 가구의 경우 약 절반(45.4%) 정도가 빈곤선 이하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의 재취업은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또한, 재취업을 하더라도 일생동안 습득했던 지식과 숙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제도 및 평생교육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족중심의 부양체계를 개편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수급요건을 보다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우리사회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그 속도가 여타 선진

국과 비교할 때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을 확산시키는 경제적 구조변화와 결합되

\* 한국노동연구원 패널팀 연구원 (shlee@kli.re.kr)

어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령화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부담도 경감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연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기존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는 고령자의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고령자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자의 재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6차년도(2003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실시된 ‘중고령자 부가조사’는 관련 연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고령자의 은퇴여부에서부터 은퇴연령, 생애주된 일자리에서의 산업·직업, 근로시간 및 임금, 주요 소득원천 및 월평균소득, 가족관계 및 여가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본조사 설문과 연계하여 현재의 주된 일자리 정보와도 비교 가능하다.

이 글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재취업을 정의하고 이들의 근로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재취업의 정의

고령자의 재취업은 자신이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왔던 일자리에서 근로활동을 영구적으로 그만두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은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규정하

는 것은 정책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연령이나 사회보장급여 수급기준, 노동시장 참여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재취업 자체가 경제활동의 한 형태이므로 이 글에서 사용될 은퇴의 개념 또한 노동시장 참여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관점에 따라 은퇴를 정의하더라도 재취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단계적인 구분이 요구된다. 첫 번째 단계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여 은퇴를 정의하는 것이다. 즉, ‘\_\_\_님은 현재 은퇴한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때 은퇴로 규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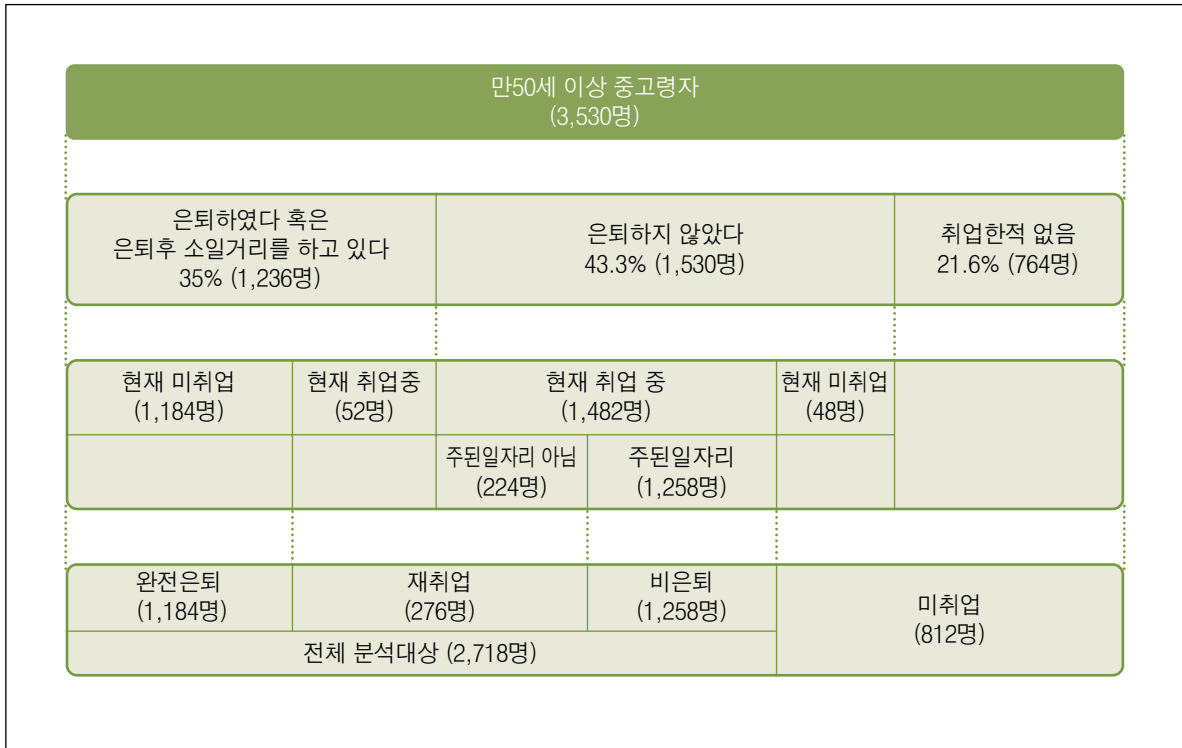
다음 단계는 객관적인 취업상태에 따라 재취업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주관적으로 은퇴하였다고 응답하고, 객관적으로도 취업 중 이라면 이를 재취업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모호한 영역이 존재한다. 비록 현재 취업한 일자리가 평생동안 일해왔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로는 현재 취업한 일자리가 생애주된 일자리인지 아닌지에 따른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다. 즉, 은퇴와 비은퇴라는 이분법적 규정에서 다룰 수 없는 재취업의 영역을 본인의 주관적 평가, 객관적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주된일자리 여부라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노동패널자료 상의 설문항목들을 중심으로 은퇴상태를 정의하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분석대상에 포괄할 연령범위에 대해서는 재취업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뿐만 아니라, 준고령자(50-54세)까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의 영구

1) 은퇴의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이미 김지경, 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KLIPS 리서치 브리프 2004-08,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1] 분석대상의 구분과 정의



적 중단을 의미하는 ‘완전은퇴’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은퇴했으면서도 현재 미취업인 경우로 규정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비은퇴’는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면서 생애주기상의 주된 일자리에 여전히 취업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은 은퇴하였더라도 현재 취업중이거나, 은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일자리가 아닌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런 분류에 따라 고령자의 은퇴상태를 나누었을 경우, 전체적인 분포 및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적인 은퇴상태의 분포는 비은퇴 46.3%, 완전은퇴 43.6%, 그리고 재취업이 10.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비은퇴의 비율이 46.3%로 가장 높으며 재취업도 12.9%나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완전은퇴가 49.7%로 가장 높으며 재취업도 남성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완전은퇴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비은퇴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재취업자의 비중은 5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그 비중이 10-13%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즉,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60대까지 유지된다고 볼 때, 이들 연령대 내에서는 재취업이라는 형태로 노동시장 참여가 연령과 큰 상관없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재취업 분포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완전은퇴자의 비율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계층이 중졸 및 고졸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학력계층이 생애소득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1〉 은퇴상태별 인구학적 특성

		재취업	비은퇴	완전은퇴	전 체
전 체		276 (10.1)	1,258 (46.3)	1,184 (43.6)	2,718 (100.0)
성별	남성	198 (12.9)	742 (48.3)	596 (38.8)	1,536 (100.0)
	여성	78 (6.6)	516 (43.7)	588 (49.7)	1,182 (100.0)
연령별	50-54세	70 (11.2)	440 (70.3)	116 (18.5)	626 (100.0)
	55-59세	71 (12.5)	350 (61.6)	147 (25.9)	568 (100.0)
	60-64세	70 (13.0)	242 (44.9)	227 (42.1)	539 (100.0)
	65-69세	45 (10.6)	145 (34.2)	234 (55.2)	424 (100.0)
	70세 이상	20 (3.6)	81 (14.4)	460 (82.0)	561 (100.0)
	평균연령 (세)	59.8	58.3	67.0	62.2
교육 수준별	무학	24 (5.7)	112 (26.6)	285 (67.7)	421 (100.0)
	초졸이하	73 (8.6)	418 (49.2)	359 (42.2)	850 (100.0)
	중졸이하	65 (11.1)	300 (51.3)	220 (37.6)	585 (100.0)
	고졸이하	73 (12.9)	300 (53.1)	192 (34.0)	565 (100.0)
	대학이상	41 (13.8)	128 (43.1)	128 (43.1)	297 (100.0)

### 3. 재취업자의 근로실태

이 절에서는 앞서 정의된 ‘비은퇴-재취업-완전은퇴’라는 구분법에 따라 퇴직사유, 종사상의 지위, 산업·직업, 임금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본다.

<표 2>는 재취업자와 완전은퇴자를 성별로 나누고 이들의 퇴직사유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퇴직사유를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구분할 때 재취업과 완전은퇴간의 비율보다는 남녀간 비율구성이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재취업과 완전은퇴의 구분을 떠나서 약 70%정도가 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 재취업 보다는 완전은퇴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발/비자발’로만 퇴직사유를 구분하는 것은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동일한 명예퇴직자라 하더라도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자발적 퇴직, 혹은 비자발적 퇴직 모두에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퇴직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재취업과 완전은퇴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자간 비율구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재취업자는 남녀 모두 ‘소득, 일거리 부족, 장애성, 적성, 근로환경 등’ 과 같이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퇴직한 비율이 각각 29.6%와 34.7%로 가장 높았다. 특히 재취업 남성의 경우에는 파산·폐업·정리해고·명예퇴직 등과 같이 시장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퇴직한 비율(26.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완전은퇴의 경우에는 건강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다는 비율이 남성(36.1%)과 여성(49.9%)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건강이나 고령과 같이 근로능력의 유지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에는 완전

〈표 2〉 재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

구 분		재취업		완전은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명)	100.0	100.0	100.0	100.0
퇴직 사유	비자발적	47.6	29.7	53.4	31.2
	자발적	52.4	70.8	46.6	68.8
구체적 퇴직 사유	파산, 폐업,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26.5	8.3	15.4	8.4
	정년 퇴직 혹은 계약만료	11.6	1.4	19.6	1.9
	소득, 일거리 부족, 장래성, 적성, 근로환경 등	29.6	34.7	13.8	13.6
	자기 사업을 하려고	5.8	4.2	3.5	0.5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1.1	18.1	36.1	49.9
	결혼,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0.5	6.9	0.3	11.6
	회사 혹은 자신의 이사로 인해	1.6	11.1	1.5	4.4
	기타	13.2	15.3	9.7	9.7

〈표 3〉 재취업자와 비은퇴자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

구 분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전체
재취업	상용직	60.0	54.9	50.7	42.9	10.0	50.0
	임시일용	15.7	22.5	27.5	26.2	45.0	24.3
	자영업	24.3	22.5	21.7	30.9	45.0	25.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은퇴	상용직	44.8	33.7	23.0	15.2	8.6	31.8
	임시일용	13.6	16.9	18.0	19.3	4.9	15.4
	자영업	41.6	49.4	59.0	65.5	86.4	5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은퇴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나 외적인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된 일 자리를 그만둔 경우에는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시키거나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취업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주된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혹은 비은퇴자와 비교했을 때 근

로조건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표 3>은 재취업자와 비은퇴자의 종사상 지위를 연령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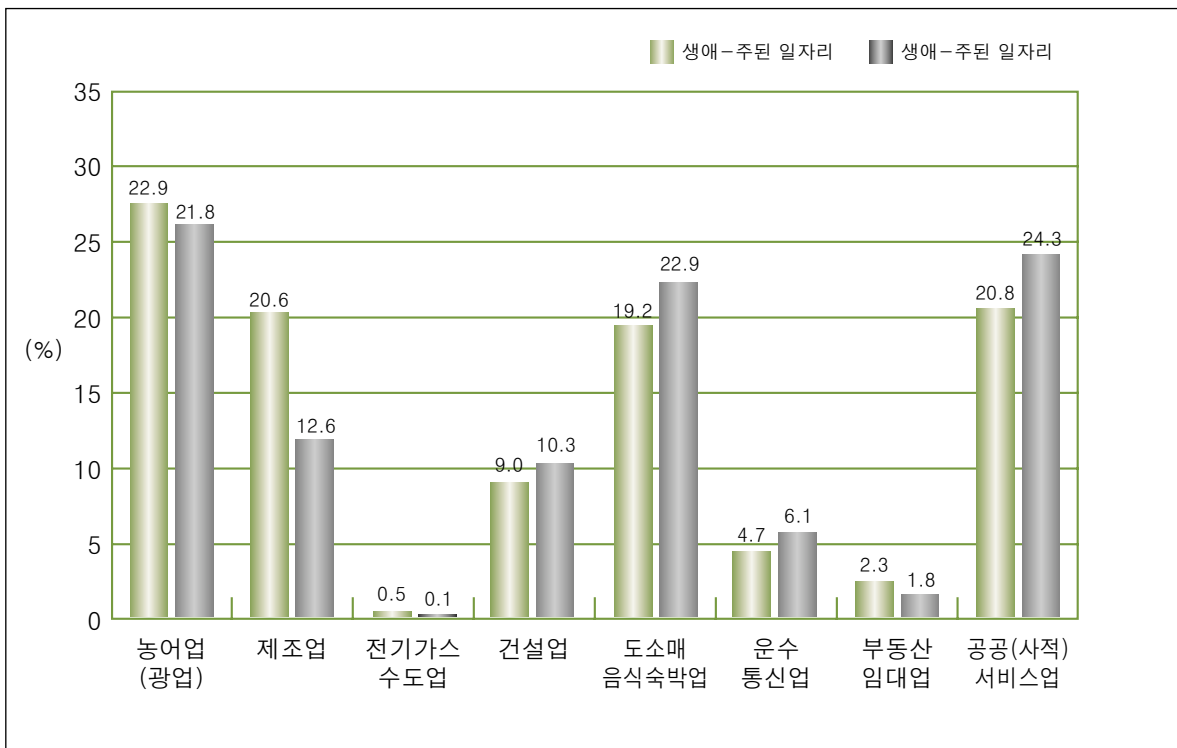
비은퇴자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50대 초반 41.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0대를 넘어서면 86.4%에 이르며, 전체적으로도 이들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

〈표 4〉 재취업자의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

구분	생애-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상용직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직	임시일용	자영업
10인 미만	12.5	37.5	92.7	41.4	38.0	98.5
10-29인	10.9	12.5	6.4	13.6	12.0	1.4
30-99인	14.1	20.8	0.9	11.4	4.0	0.0
100인 이상	32.0	4.2	0.0	14.4	4.0	0.0
공무원, 교원 등	10.9	0.0	0.0	5.3	14.0	0.0
잘모름	19.5	25.0	0.0	14.4	28.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로비)	[49.0]	[9.2]	[41.8]	[50.0]	[24.3]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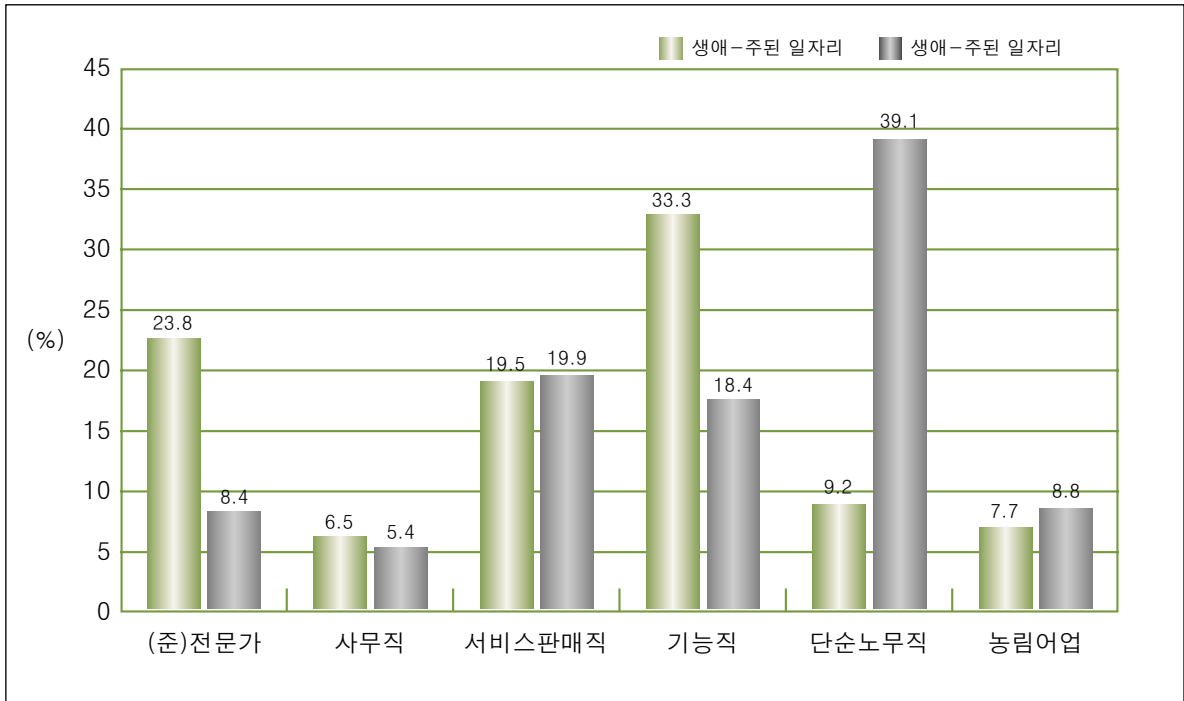
[그림 2] 재취업 일자리의 산업분포 변화



어섯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경제활동 동인구조사 자료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재취업자

역시 연령증가에 따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3%로

[그림 3] 재취업 일자리의 직업분포



훨씬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재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24.3%로 비은퇴자보다 약 9% 포인트가 높았다.

재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이전에 가졌던 주된 일자리와 비교할 때에도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4). 재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는 상용직이 약 50%로 현재 재취업한 일자리의 상용직 비율과 거의 동일하지만, 자영업자의 비중은 주된 일자리에서 41.8%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상용직의 비율이 양자간에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체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의 상용직 종사자는 10인 미만의 사업장 종사자가 12.5%, 10-29인이 10.9%에 그치는데 반해 1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비중이 32%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재취업 일자리의 경우에는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41.4%나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임시일용직과 자영

업 종사자들도 주된 일자리에 비해 재취업일자리의 사업체규모가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했을 때, 종사상 지위의 변화 못지않게 산업 및 직업 분포의 변화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업 부문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는데, 주된 일자리에서는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20.6%였으나, 재취업을 거치면서 8% 포인트 감소한 12.6%로 나타났다(그림 2). 이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3.7% 포인트 ↑) 및 공적·사적 서비스업(3.5% 포인트 ↑)으로 주로 이동하였으며, 건설업 및 운수통신업 종사자의 비중도 소폭 상승하였다.

직업분포의 변화는 단순노무직의 증가와 전문직 및 기능직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그림 3). (준)전문직은 15.4% 포인트, 기능직은 14.9% 포인트가 각각 감소한

〈표 5〉 재취업자와 비은퇴자의 월평균근로소득(시간당근로소득) 분포

(단위 : 만원 (백원))

	재취업자			비은퇴자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상용직	114 (72)	130 (87)	71 (31)	173 (90)	210 (110)	98 (48)
임시일용	73 (41)	83 (43)	51 (39)	86 (58)	110 (72)	60 (44)
자영업자	121 (74)	134 (80)	56 (42)	134 (74)	151 (85)	85 (43)
전 체	105 (65)	120 (75)	62 (35)	139 (77)	167 (92)	84 (45)

단, ( ) 안은 시간당 근로소득액임.

반면, 단순노무직의 비율은 약 30%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다.

이처럼 재취업에 따라 단순서비스직 위주의 산업 및 직업 이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들이 평생동안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재취업을 통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재취업 후 해당 일자리에에서의 근로소득 변화를 살펴보자.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재취업 일자리에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105만원으로 비은퇴자 일자리의 소득 140만원과 비교할 때 약 7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퇴자들과 재취업자들의 월평균소득 격차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재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114만원으로 비은퇴자의 66%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은 그 보다 높은 85%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는 비은퇴자와 비교할 때 약 90%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취업자와 비은퇴자간의 월평균 소득격차는 남녀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취업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비은퇴 남성의 72%, 재취업 여성은 비은퇴 여성의 74%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재취업 남성-상용직은 비은퇴 남성-상용직의 월평균소득과 비교할

때 62%수준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재취업자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전일제 상용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나 실제적인 근로조건은 이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 4. 은퇴상태에 따른 가구소득의 분포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재취업자는 종사상지위, 산업·직업, 사업체 규모 등에서 생애주기상의 주된 일자리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특히 근로소득 측면에서 비은퇴자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재취업으로 인해 일정부분 소득감소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의 소득원천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퇴직금이나 자산소득 등으로 인해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재취업이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및 다양한 소득원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 절에서는 분석범위를 배우자 및 가구라는 틀로 확장하는 한편, 고령자의 취



〈표 6〉 가구주의 은퇴상태별 월평균 총소득액의 구성

(단위 : %, 만원, 명)

		비은퇴	재취업	완전은퇴
구성비(%)	월평균 총소득	100.0	100.0	100.0
	본인의 근로소득	82.2	67.5	0.5
	배우자의 근로소득	12.3	17.5	16.3
	공적연금소득	1.0	4.0	16.2
	개인연금소득	0.0	0.1	0.1
	금융자산소득	0.7	2.7	6.3
	부동산소득	1.6	5.1	21.2
	사회보험수급	0.2	0.3	2.6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금	0.1	0.1	15.7
	자녀용돈 및 친지보조금 등	1.8	2.6	20.2
개인의 월평균 총소득액 (만원)		182	156	91
상대비 (%)		100.0	86	50.0
사례수 (명)		854	223	738

업활동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고려하여 고령자 자신이 가구주인 경우로 제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가구주의 은퇴상태에 따라 개인의 총소득 구성을 살펴보자(표 6). 우선, 비은퇴 가구주는 총소득 중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대부분(82.2%)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2.3%로 부부간의 근로소득을 합할 경우 총소득의 95%를 차지하였다. 재취업 가구주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67.5%)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비은퇴 가구주보다 낮는데 반해 배우자의 근로소득(17.5%)이 차지하는 몫은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이 차지하는 몫은 각각 4%와 5.1%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적연금의 수급자격이 엄격하고 개인연금 또한 미발달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재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손실을 매우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완전은퇴는 소득원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자산 및 생애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동산소득 및 연금소득(개인연금포함)이 절반에 가까운 45.7%를 차지하며, 자녀용돈 및 친지보조금과 같은 사적이전(20.2%)도 이에 못지않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포함하는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금의 비율도 15.7%나 되는 반면, 사회보험수급으로 인한 소득은 2.6%에 그쳤다. 즉, 자산이나 생애소득이 축적된 경우 완전은퇴를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미비로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에 기대거나 정부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

더욱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원천의 구성비가

〈표 7〉 가구주의 은퇴상태별 월평균 총소득액의 구성

(단위 : %, 만원, 가구)

소득 몫	비은퇴	재취업	완전은퇴
가구 총소득 대비 본인의 근로소득	46.6	39.9	0.2
가구 근로소득 대비 본인의 근로소득	66.1	52.7	0.6
가구 총소득 대비 본인의 총소득	75.3	69.0	52.8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액(만원)	242	228	157
상대비(%)	100	94.2	64.9
사례수 (가구)	853	221	738

주 :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액은 지난 한 달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수급액,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값임.

늘어날수록 이전과 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재취업 가구주의 총소득은 월평균 156만원으로 비은퇴 가구주의 86%수준이며, 완전은퇴자의 총소득은 월평균 91만원으로 비은퇴 가구주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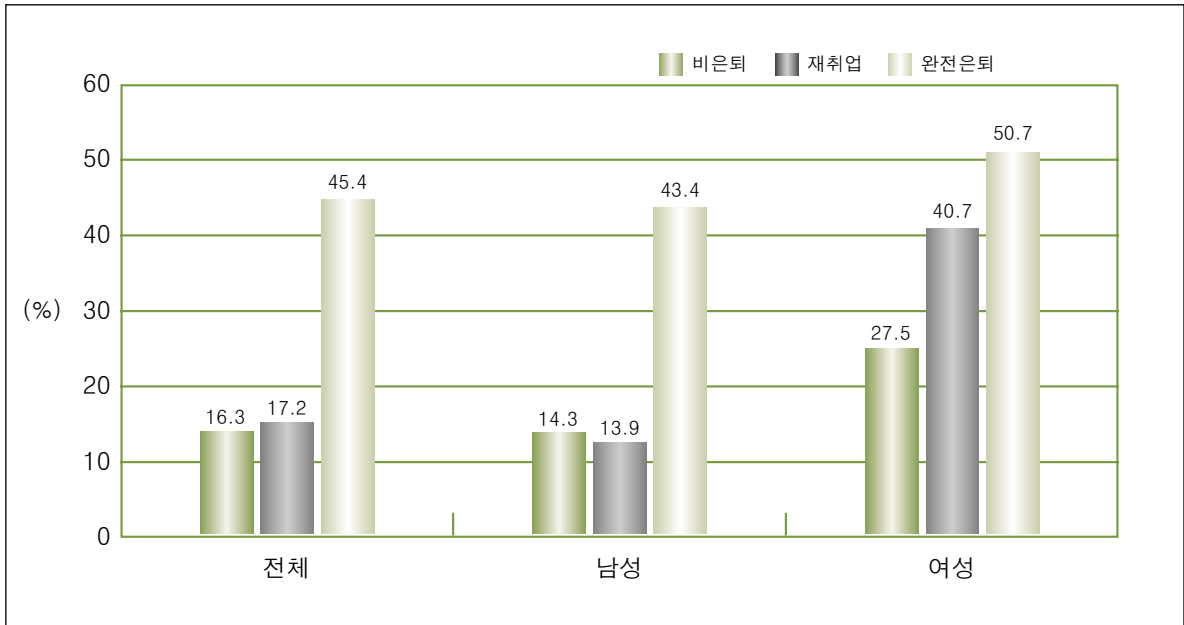
이는 고령자의 본인의 근로소득을 가구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표 7>은 가구내 다른 가족성원의 소득이 뒷받침되더라도 고령자 본인의 소득이 은퇴유형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비은퇴자의 경우 가구 총소득 대비 본인의 근로소득의 몫이 46.6%이지만, 가구 근로소득과 대비할 때에는 66.1%이며,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본인의 총소득몫은 7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취업 가구주는 가구총소득 대비 본인의 근로소득 몫이 39.9%로 비은퇴 가구주보다 약 6.7% 포인트가 낮았으며, 가구총소득 대비 본인의 총소득 몫 또한 69%로 비은퇴 가구주와의 격차가 6.3%p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완전은퇴 가구주는 가구총소득 대비 본인의 총소득 몫이 52.8%로 비은퇴 가구주보다는 22.5% 포인트, 재취업 가구주보다는 16.2% 포인트가 각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을 비교하면, 여기에는 다른 가족성원의 소득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상태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재취업 가구주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228만원으로 비은퇴 가구의 94.2%수준이었으며, 완전은퇴 가구는 64.9%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구주의 은퇴상태에 따른 근로소득 격차는 가구의 빈곤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는 은퇴상태별 절대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구주가 비은퇴자이거나 재취업자인 가구는 절대빈곤율이 각각 16.3%와 17.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완전은퇴 가구의 경우 약 절반(45.4%) 정도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을 얻은 것은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에는 비은퇴 가구라 하더라도 27.5%의 빈곤율을 보였으며, 재취업 및 완전은퇴 가구 또한 각각 40.7%와 50.7%의 빈곤율을 기록하였다. 요컨대,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확보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상의 지위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이것만

[그림 4] 가구주의 은퇴유형별 절대빈곤율



주 :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2003년)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임.

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5. 맺음말

이 글은 고령자의 은퇴상태를 본인의 주관적 판단과 취업상태, 그리고 주된 일자리여부에 따라 비은퇴-재취업-완전은퇴로 구분한 후, 재취업을 중심으로 근로실태 및 고령자 가구의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고령자의 재취업은 자신의 주된 일자리와 비교할 때 종사상 지위, 산업·직업, 임금과 같은 전반적인 고용조건을 하락을 가져왔다. 특히, 재취업 시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일생동안 습득한 지식과 숙련이 재취업 일자

리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재취업 일자리를 통해 획득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가구총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사회보험이나 퇴직금에 의한 소득보완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확보는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구조가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 얼마든지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세 째, 가구주가 완전은퇴한 가구는 약 절반 정도가 빈곤선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완전은퇴자의 상당수가 건강이나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육체적인 근로능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원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정도만이 생애소득이나

자산,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녀나 친지의 용돈과 같은 사적이전이나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고령자의 재취업은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또한, 재취업을 하더라도 평생동안 습득했던 지식과 숙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제도 및 평생교육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족중심의 부양체계를 개편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 수급요건을 보다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